# 감사결과

번호

## 주요 내용

# 1. 전담조직 지정 분야

■ 전담조직 및 개별사업장 기준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필요 (판단기준)

#### 가. 전담조직 설치 기준

중대재해법 시행령 등에 각 부처·지자체의 ①총 상시근로자<sup>1)</sup> 수가 500인 이상이고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②안전보건 전문 인력<sup>2)</sup>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 설치 대상(설치의무는 ①과 ②를 동시 충족 요건)

- ☞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②안전보건 전문인력은 '사업장' 단위로 선임하여야 함
- 1). 상시근로자 ⇒ 직접고용 근로자를 기준 (공무원·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등 포함)
- 2). 안전보건 전문인력(공공행정) 배치기준 (각 사업장별 현업업무종사자\* 기준)
- · 50명~1천명 (총 3명): 안전관리자 1명, 보건관리자 1명, 산업보건의 1명
- · 1천명~5천명 (총 4명): 안전관리자 2명, 보건관리자 1명, 산업보건의 1명
- · 5천명 이상 (총 5명): 안전관리자 2명, 보건관리자 2명, 산업보건의 1명

#### < 해양경찰청(소속기관 포함) 상시근로자 현황 >

('21, 12, 31, 현원기준)

<b>공무직 근로자</b> (직종별)							
합계	사무	시설	경비	조리	미화	연구원	기타
196	10	44	0	1	138	2	1
23	4	8		1	9		1
103	1	7			95		
65	5	28			30	2	
3		1			2		

			공무직 근	<b>로자</b> (직종별	)		
합계	사무	시설	경비	조리	미화	연구원	기타
2					2		

- ※ 현업업무종사자 범위 「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(고시)」 [별표 1]
- 1.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,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·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
- 2. 도로의 유지·보수 등의 업무
- 3. 도로・가로 등의 청소, 쓰레기・폐기물의 수거・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
- 4. 공원・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
- 5.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
- 6.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
- ※ 소속 현업업무종사자\*가 300명 미만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위탁(전문의 위촉) 가능

#### 나. 사업장 판단기준

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조건의 결정 및 인사· 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는지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#### 【사업장 판단기준】

- ·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,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
- ·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, 사업소,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 할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(기구)이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(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, '12. 7. 30.)

#### (점검결과)

- 본청 운영지원과 내 '복지계'를 '안전보건복지계'로 명칭변경 후 전담조직 지정('22. 1. 4.) 및 유동정원 2명 배정 후 인사발령 완료('22. 2. 7.)
- 현재 전담조직은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따른 <u>복지</u> 업무와 중대재해법상의 의무이행사항을 동시 수행

#### 주요 내용

- \*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을 총괄·관리 업무로 본부에 설치, 경영책임자를 보좌
- \* 전담조직의 **부서장**과 해당 **부서원** 모두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 관리 가능 (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"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조직" - 49p)
- ⇒ 안전보건복지계장(1명), 업무담당(2명) 등 총 3명이 중대재해 예방업무 전담
- 현행「해양경찰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」에는 총 9개의 사업장 (본청, 지방청 5개소, 교육원, 중특단, 정비창)으로만 구분
- 지리적 분산 및 인사·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중인 소속 해양경찰서를 지방청의 단일사업장에 포함
- \*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법상 전담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 인력 구성 권고

(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'중대산업재해 부문' FAQ "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" - 26p)

(조치할 사항) 운영지원과장(안전보건복지계)은 전담조직(안전보건복지계)이 중대재해 예방업무에 전념 가능토록 복지와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, 해양 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<u>일선 관서별 실질적 관리 가능한 개별 사</u>업장의 기준을 마련 (통보)

① '23년 분계 목표, ② 경찰서 단위 사업장 구분 🖒 실행계획 반영 완료('22. 3. 24.)

# 2. 「기본계획 수립」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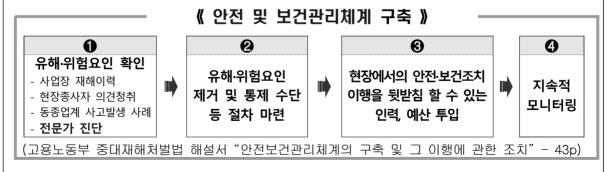
■ 안전·보건관리체계 등 구축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

(판단기준) 중대재해법 제4조 등에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<sup>3</sup>에 대한 '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'를 부과

- 3).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'**종사자**(①+②+③)'를 대상
-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- ② 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- ③ 각 단계별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 노무 제공하는 자

#### 「중대재해법」상 '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' 사항

-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
- 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
- 4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
- 모든 종사자를 대상 '안전보건관리체계'를 구축, 그 중 <u>현업업무종사자에</u> 대해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'안전보건관리체제'에서 규정한 의무사항(안전·보건 전문인력 배치)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함
- ✔ 안전보건관리체계 : 스스로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·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·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...... (「중대재해법」제4조 및 제9조)



✔ 안전보건관리체제 :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.....(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장 제1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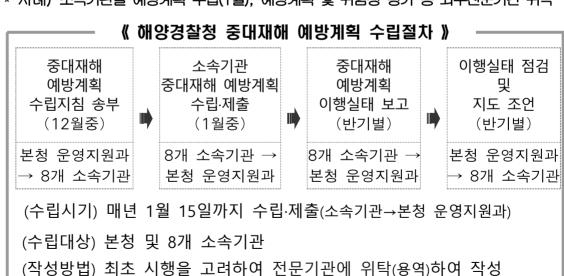
## 주요 내용

#### 《 안전 및 보건관리체제 구축》

- **1** 안전보건총괄책임자 <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(산안법 제62조)
- **❷ 안전보건관리책임자** <□ 현업종사자 100명 이상
- ❸ 관리감독자 < 현업종사자 1명 이상</p>
- ④ 안전·보건 관리자 <□ 현업종사자 50명 이상 (300명 미만 외부 위탁 가능)
- **6 산업보건의** < 현업종사자 50명 이상(외부 위촉 가능)
- **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** < 현업종사자 100명 이상

#### (점검결과)

-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"안전·보건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" 이행을 위한 '기본계획' 수립 완료('22. 1. 19.)
- \* 기본계획을 기준, 각 기능별 세부업무특성을 반영한 세부실행계획 작성 추진 중
- 일부 과제 및 소속 기관별 추진계획이 시기적 또는 예산 미확보 상황 에서 현실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어려운 여건임
- \* 사례) 소속기관별 예방계획 수립(1월), 예방계획 및 위험성 평가 등 외부전문기간 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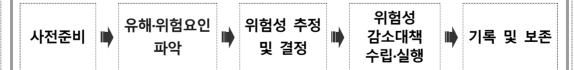


- "안전·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" <u>9개 항목</u>은 경영책임자 등의 필수 의무 이행 사항 (「중대재해법 시행령」제4조)

- 아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▷ 완료
- ② 안전·보건업무 총괄·관리 전담조직 설치 ⇨ 완료
- ❸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▷ 추진중
- 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☆ 추진중
-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·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· 평가·관리) ☆ 추진중
- ⑥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▷ 현업 업무종사자 기준 ▷ 추진중
- 좋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여부 점검 ☆ 추진중
-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조치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☆ 추진중
- ⑤ 도급,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 ☆ 추진중
- <u>"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확인·개선"</u> 이행점검을 위한 외부전문 기관 위탁 등 **유해·위험요인 파악 준비기간이 촉박** (반기 1회 점검)
- \* 위험요인 파악 후 예방대책을 수립 ⇒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

#### 《 해양경찰청 위험성 평가 및 확인·개선 절차》

■ 최초 시행을 고려 <u>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 및 보고 계획</u> ⇒ 예산 확보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 <평가시기: 위험성 평가(연 1회), 이행점검 보고(반기 1회)>



- ※ 모든 사업장은 반기 1회 이상 유해·위험 요인을 확인 및 점검 하여야 하며 반기 1회의 최초 점검 기한은 「중대재해법」시행 이후인 '22. 6. 30.까지임 <고용노동부>
- 유해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절차를 마련

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

####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- 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<u>해당</u>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## 「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」 제6조(근로자 참여)

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- 1.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
- 2.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
- 3.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
(조치할 사항) 운영지원과장(안전보건복지계)은 <u>예방계획수립주체 및 보고</u>절차 등 세부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 (통보)

"해양경찰청 중대재해 예방 실행계획" 세부업무처리절차 반영 완료(22. 3. 24.)

# 3. 「대응계획 수립」분야

■ 전담조직을 통한 통일된 예방 매뉴얼 수립 필요

(판단기준)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

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**①**~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

## ♠ 작업증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
<행동매뉴얼 마련 기준>

작업중지 ► 근로자 대피 ► 위험요인 제거 ► 추가 피해 없을 경우 작업 재개

## **②**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

- 119 등 긴급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방안 포함 마련

#### **6**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

- 현장 출입통제,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사항 공유,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포함 마련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은 원칙적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(공무원 포함)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

#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'안전·보건 조치 의무' 사항

-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,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,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※「중대재해법」의 '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'와는 별개
- 그러나 '공공행정' 또는 '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'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일부 규정(①안전보건관리체제, ②안전보건 관리규정, ③안전보건교육) 적용을 제외
- 다만, <u>현업업무종사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기준)에</u> 대해서는 법적용 제외없이 「**산업안전보건법」을 모두 적용**

#### (점검결과)

- 전담 조직(안전보건복지계)은 응급대응체계가 포함된 예방 매뉴얼을 자체 제작 진행 중에 있음

	_
8	
	Y

# 《 해양경찰청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 계획 》

□ 주요 내용

구분	구 성	상 세 내 용
제1장	안전·보건 관련 법의 이해	►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►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
제2장	재해자 발견 및 재해 발생시 절차	<ul><li>▶ 재해자 발견시 대응 절차</li><li>▶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</li><li>▶ 재해 발생시 보고 절차도</li></ul>
제3장	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	<ul> <li>▶ 일반 분야 (위험기구사용, 위험업무, 계절성업무 등)</li> <li>▶ 함정 분야 ▶ 파출소 분야 ▶ 특공대 분야,</li> <li>▶ 구조대 분야 ▶ 항공단 분야 ▶ 해양오염방제 분야 등</li> </ul>

#### □ 추진 계획

매뉴얼 작성 (각 기능) _	취합 및 검토 (안전보건복지계)	] ⇒	전문업체 편집	<b>⇒</b>	배 부
~ '22. 2. 11	~ '22. 2. 18		~ '22. 2. 25		'22. 2월 말

- 그런데 안전·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통일된 용어,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기능은 소속관서를 대상으로 자체 지침 별도수립 시달하여 일선 현장부서 업무 혼선 초래
- 한편, 중대재해법은 전면 시행('22. 1. 27.) 1년 前 제정('21. 1. 26.)되어 사전에 그 시행을 예고 하였기에 관련제도 시행 이후 자체 제도 정비前 사고 발생시 별도의 예외조항은 없음
-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에 따라 그간 적용이 제외되었던 '공공행정'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소속된 관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·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

(조치할 사항) 운영지원과장(안전보건복지계)은 본청 각 기능이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<u>각종 업무 시달시 전담조직의 검토를 거치는 등 통일된</u>기준으로 총괄 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 (통보)

## 주요 내용

관련 기능이 일선관서에 업무시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없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

## 4. 「제3자 도급·용역·위탁 관리」분야

■ 제3자 도급·용역·위탁 관리 분야 세부 매뉴얼 마련 필요

(판단기준)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·용역·위탁 등(이하 '제3자 도급')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~⑥의 <u>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3자</u>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
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마련
- ② 안전·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
- ❸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·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
- 제3자 도급 계약 등에 있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**경영책임자가 계약** 목적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'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'를 부여

#### 《 도급인의 의무 이행사항》

" ==== = :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
구분	내용			
책임자 지정	발주공사에 대해 '안전보건책임자' 지정			
산업재해 예방조치	· 발주자(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)			
* 발주처는 수급인 대상 3개월 1회	· 설계자(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)			
이상 점검	· 수급인(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)			
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	설계도서 기준			
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점검	기준에 따른 계상, 반기 1회 이상 점검			
공사현장 점검	수급인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점검			

#### (점검결과)

- 발주는 「민법」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

# 번호

#### 주요 내용

- \*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<u>시공사 및 그 경영</u>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
- 예산 편성 및 원가계산서 작성시 시설물 특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산정 필요
- \* 관리책임자는 유해·위험요인 확인절차에 따른 개선사항 관련 반드시 안 전·보건 관련 예산 편성(권한과 책임 부여)
  - · 안전관련 각종 심사 비용, · 보건관련 직원 건강검진 비용
  - ·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(개인·공용물품), · 위험시설 등 안전설비 개선비용
  - · 기타 안전·보건 관련 교육·훈련비용
-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 분리하여 낙찰율 미적용 조치(안전관리비 100% 반영) 필요



(조치할 사항) 운영지원과장(안전보건복지계)은 제3자 도급·용역·위탁 관리 분야에 대한 세부이행절차를 마련하고, 관리감독·책임자가 이를 정기적으 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반영 검토 (통보)

실행계획 일부 반영(완료), 세부이행사항은 향후 매뉴얼 개정시 반영 여부 검토

# 5. 「기타 제도정착」분야

■ 중대재해법 법령 쟁점 해소 및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필요

(판단기준) 「중대재해법」이 제정된 이후 전면 시행까지 ●전담조직 지정이

#### 주요 내용

지연 되는 등 자체적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②준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본청 기능과 일선관서의 일부 업무 혼선이 발생 ③이에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명확한 법적용 기준 정립이 우선 필요

#### (점검결과)

- 해양경찰의 업무특성과 관련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'재해'와 '사업장'에 대한 우리청 적용 여부의 법령 쟁점을 우선 해소</u>하여 조속한 안전보건관리 제도정착 필요 (고용노동부 회신 대기중)

#### 《 회의 내용》

(회의일시) '22. 2. 3.(목), 고용노동부 회의실 (회의주제) 산업재해에 '치안·구조활동' 제외 검토 요청

- ✔ 재난현장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✔ 현장 활동시 안전·보건 측면에서 예측불가능한 사항 등 적용 여부(답변내용) 내부회의 및 관련전문가 자문 등 검토 예정, 답변에 시일 필요※ 회의결과 : 구조 치안활동은 산업재해현장 제외/포함 의견이 공존
- 컨테이너를 숙소 및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협의\* 절차를 거쳐야 함. 일선 관서는 사무 및 숙영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임의 사용 우려, 실태조사 미비
- \* 가설건축물 축조협의
-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, 한시적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 되지 않지만 **신고/허가 등의 절차**를 거쳐야 함(지자체 별 관련규정 상이)
- 일반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, 전기, 수도,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 제한
  -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사용 중 화재 등 사고발생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유해·위험요소 방치 등의 사유에 해당
  - ⇒ 각 기능별 전반적인 실태 조사 후 대책 강구 필요

(조치할 사항) ①운영지원과장(안전보건복지계)은 해양경찰의 치안·구조활

변호	주요 내용
	동 현장이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결과에 따라 관련업무에 혼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, 타 유사기관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적극 대응 필요 (통보), ②기획재정담당관(국유재산계)은 해양경찰 소관의 국유재산 부지에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(통보)